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2.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2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9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2003. 2.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김 영 남

가. 제안이유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및 대부이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융자받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생계가 곤란한 자의 자립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와 관련하여 융자조건을 융자대상 대학생의 성적이 70점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함. (안 제4조제3항)

○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안 제7조제1항)

○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5%에서 연3%로 하향조정하여 융자받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안 제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6. 1. 18일 제정되고 그 동안 4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저금리현상에 의한 시중금리와 차이가 근소하고 융자한도액도 낮아 실질적인 주민혜택도 적어짐에 따라 동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안 제4조제3항에서 학자금대부와 관련한 융자조건이 현행규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생의 경우에는 융자신청 전 학기 성적이 70점(평균 " C학점")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생의 경우와 같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함.

○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을 규정한 안 제7조에서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각각 1천만원을 상향조정 하였고, 융자금의 대부이율도 연 5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하향조정 하였음.

○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의거 결산보고서 작성은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치한 융자기금의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 상향조정하고 대부이율도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2퍼센트 하향조정 함으로서 해당주민이 실질적으로 융자금을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는 사료되나 대출업무

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함에 따른 담보 등의 융자조건이 선행되어야 융자가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 본 기금을 활용하기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고 판단됨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본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오윤수 위원) : 연대보증제도를 시행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나?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좋은 방법을 연구 검토할 것임.

○ 질의요지(남두희 위원) :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시효없이 계속적으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96년이후 체납액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마포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및 대부이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융자받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생계가 곤란한 자의 자립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와 관련하여 융자조건으로 융자대상 대학생의 성적이 70점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안 제7조제1항)

다.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5퍼센트에서 연3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융자받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3. 개정근거

(1) 지방자치법(2002. 3. 25 법률제6669호) 제133조

(2) 지방재정법(2001. 1. 29 법률제6400호) 제110조제3항

4.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5. 예산조치 필요성 :별도조치 필요없음.

6. 참고사항

(1) 입법예고(2002. 12. 26 ~ 2003. 1. 1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대학생의 경우에는 융자신청 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평균 "C학점"이상)인 자로 각각 하되, 대학입학생은 학기중 성적이 없을 경우 학과장의 추천서로 갈음한다"를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은행법 제3조제1항"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를 "소득 자금은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고, 동조제2항중 "5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중 "기금운용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잔액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례의 이율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융자대상) ①~②(생 략) ③제2항제3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융자신청 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평균 "C학점"이상)인 자로 각각 하되, 대학입학생은 학기중 성적이 없을 경우 학과장의 추천서로 갈음한다 ④~⑤(생 략)	제4조(융자대상)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④~⑤(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생략) ③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현행과 같음) ③---------- ------은행법---------- ---------- ---------- ------- ④(현행과 같음)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소득자금은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 ---------- ---------- ②----------3퍼센트---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융자금의 반환, 통보) ①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이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3. (생 략) ②~③(생 략)	제16조(융자금의 반환, 통보) ①--- ---------- ---------- ---------- ---------- ---------- 1. ---------- -----위원회---------- ----- 2. ---------- ----------위원회----- ---------- 3.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80일 이내---------- ---------- ②(현행과 같음)